

성과 계약서

2019. 01. .

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계약의 목적) 이 계약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.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,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원장이 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(계약의 체결) ① 도지사과 원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, 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 날인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.

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 3 조(계약기간)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②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원장의 사임 또는 해임,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 4 조(원장의 권한과 책임) ① 원장은 진흥원의 최고경영자로서 진흥원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② 원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.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출자.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, 재단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③ 원장은 법, 조례,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, 제7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5조(임기 중 겸직제한 등) ① 원장은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원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지득한 진흥원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기밀을 이용하여 진흥원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.

③ 원장은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.

제6조(의원면직 제한) 도지사는 원장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, 징계 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

제 7 조(경영목표) ①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(이하 “경영평가”라 한다) 지표항목으로 한다.

②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③ 사업연도 중에 임기의 만료 등의 사유로 원장이 교체될 시에는 후임자는 전임자의 경영목표를 승계한다.

제 8 조(경영실적 보고) 원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4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은 경영평가에 따른 자료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 9 조(성과평가) ① 원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(이하 “성과평가”라 한다)는 도지사가 행하며, 그 평가는 경영평가로 같음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영평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10 조(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) ① 원장의 성과평가는 다음연도 성과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한다.

② 도지사는 원장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안전행정부에서 정한「지방 출자.출연기관 인사.조직 지침」에 따르며, 경영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다

③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원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급은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,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원장에만 적용한다.

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

제 11 조(보수체계) 원장의 보수는 기본연봉, 성과급, 부가급여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진흥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2 조(기본연봉) ① 원장의 임기 중 기본 연봉액은 75,200,000원으로 하며 매월 12분의 1씩 진흥원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.

② 원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 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③ 원장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원장의 기본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.

제 13 조(성과급) ① 원장의 성과급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급률에 연봉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원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, 그 기준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.

② 성과급 지급 시기는 성과급 지급률이 확정 통보된 이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원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원장이 법 제9조, 제10조 또는 정관,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와 제6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④ 원장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원장의 성과급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14 조(보수 지급후의 조정) ① 원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, 오류의 발견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.

② 원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퇴임한 원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,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원장으로부터 그 금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.

제 15 조(퇴직금) ① 퇴직금은 원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,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.

② 퇴직금 지급의 월평균 보수 산정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기본연봉, 부가급여(가족수당 제외)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과 최종 1년간 지급된 성과급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고,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.

④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6 조(복리후생 등) ① 진흥원에서는 원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.

② 원장의 휴가, 의료, 보건관리,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진흥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 17 조(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) ①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정부 또는 정책,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
2.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,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
3. 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내.외부 감사 결과 통보 및 안전행정부 장관이 권고한 경우

② 제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18 조(계약의 해석)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원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의 해석에 의한다.

제 19 조(권리의 귀속) 원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, 특허권,

등록상표,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되며, 원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.

제 20 조(세금) 원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원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.

제 21 조(계약서의 보관)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.

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은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.

2019 . 01. .

경 상 북 도 지 사
이 철 우



경 상 북 도 청 소 년 진 흥 원
원 장 서 원

